

#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 경유지로서 홍콩의 전략적 가치; 중국-홍콩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중심으로

이종석\*

## 목 차

요약	3.2 중-홍콩 CEPA 체결과 최근 동향
1. 서론	4. 홍콩 경유 중국 진출 전략의 비교우위 검토
2. 중국의 서비스 시장 성장과 유망 진출 업종	4.1 제도적 측면: 중-홍콩 CEPA를 활용한 시장접근 확대 및 규제 회피
2.1 중국의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배경	4.2 비즈니스 전략측면
2.2 한국의 대중국 진출 유망 서비스 업종	5. 토론 및 시사점
3. 대중국 교역 거점 홍콩의 위상 변화와 중-홍콩간 CEPA	참고문헌
3.1 대중국 교역 거점 홍콩의 위상 변화	Abstract

##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폭발적으로 커지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대안 전략의 하나로서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비스 무역은 상품 보다 규제가 많고 노동집약적이며 내수중심이라 대외개방이 더딘 분야이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더 심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되도록 덜 적용 받아야 하고, 적용받을 때도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 중-홍콩 CEPA를 활용해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를 통해 도출한다. 이와 함께 한-중 및 중-홍콩간 조세협약 차이와 홍콩 기업가들이 가진 네트워크도 중국진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표제어: 서비스산업, 중국진출, 규제회피, 중-홍콩 CEPA, 한-중 FTA팀 운영감리*

접수일(2018년 8월 27일), 수정일(1차: 2018년 9월 4일), 게재확정일(2018년 9월 15일)

\* 산업통상자원부, peterz73@hotmail.com

## 1. 서론

II2.5 기획 이후 중국 정부가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천명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국 서비스산업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미화 5.73조 달러로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GDP 1.4조 달러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 중국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도 2000년 39.8%에서 2016년 51.1%까지 상승하였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아직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한반도 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으로의 단체관광 금지, 중국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기를 겪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이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협의문을 발표하였으나, 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기업들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시 겪게 되는 규제에 대해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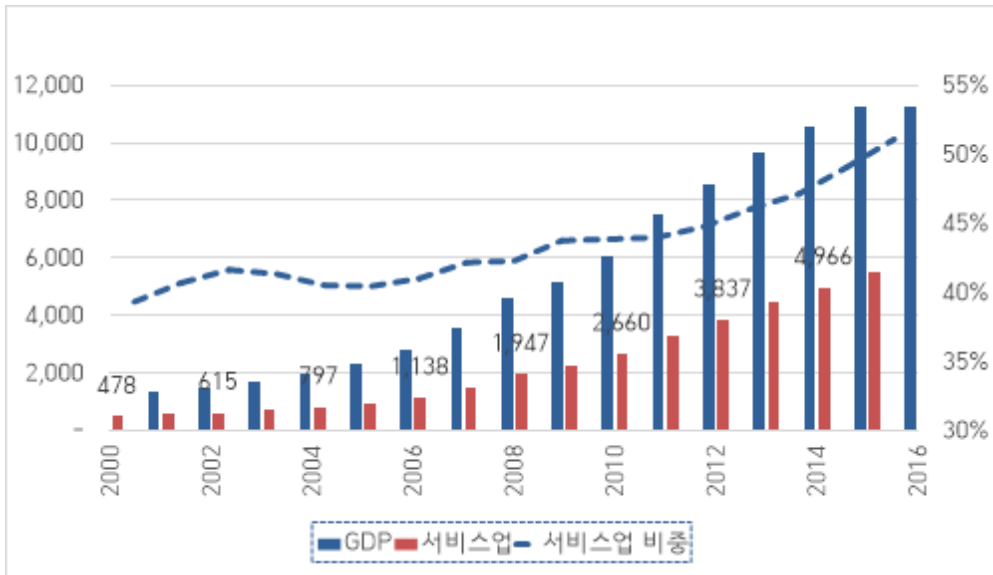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서비스 진출시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대안으로 홍콩을 경유하는 대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한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유망한 업종에 대해 중국 내 시장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홍콩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 교두보로서 위상과 그 부침을 살펴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중국-홍콩 간 경제동반자 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중-홍콩 CEPA’)를 개관한다. 이후 한국기업이 중국에 직접 진출하

는 경우 적용받는 ‘한-중 FTA’와 홍콩을 통해 경유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중-홍콩 간 CEPA’를 앞장에서 도출한 유망 서비스업종별로 비교하면서 홍콩의 대중국 서비스 진출 대안 경로로 홍콩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2. 중국의 서비스 시장 성장과 주요 유망 진출 업종

### 2.1. 중국의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배경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화 5.73조 달러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GDP 1.4조 달러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며,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 규모인 9,657억 달러 대비 5.9배 규모이다. (Fig. 1-1 참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2016년 기준 51.1%에 불과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13.5 계획(2016~2020)상 최저 목표 성장률 6.5%와 서비스산업 비중을 56%까지 높이기로 한 목표(Yang and Park, 2015)를 조합하여 전망하면 2020년까지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8.6조 달러로 2016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1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UNCTAD (2018)

Fig. 2-1 GDP and Service Sector Growth in China

중국 소비시장 급속한 성장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산업 정책적 요인이며, 둘째, 사회적 요인이다. 우선 산업 정책적 요인으로 는 시진핑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중국제조업 2025’ 및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중국제조 2025’는 정보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 추진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공지능화, 친환경화 추진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부문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Jeong, 2017). 이는 그간 중국이 취해 온 규모의 경제 및 임가공 방식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도약을 꾀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R&D, ICT, 산업디자인, 컨설팅, 공급망 관리, 첨단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중간재로 투입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12.5규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가속화’ 방침을 천명, 서비스업을 산

업 구조개선의 중점으로 삼고, 표준 정립, 서비스 시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 생활형 서비스 발전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Jeon and Kang, 2015; Jeong, 2017). 13.5규획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현대적 서비스’로 규정하며,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비즈니스 물류 등의 대외개방 확대, 생산성 서비스업의 전문화 촉진, 교육훈련, 건강, 문화, 오락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품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Jung,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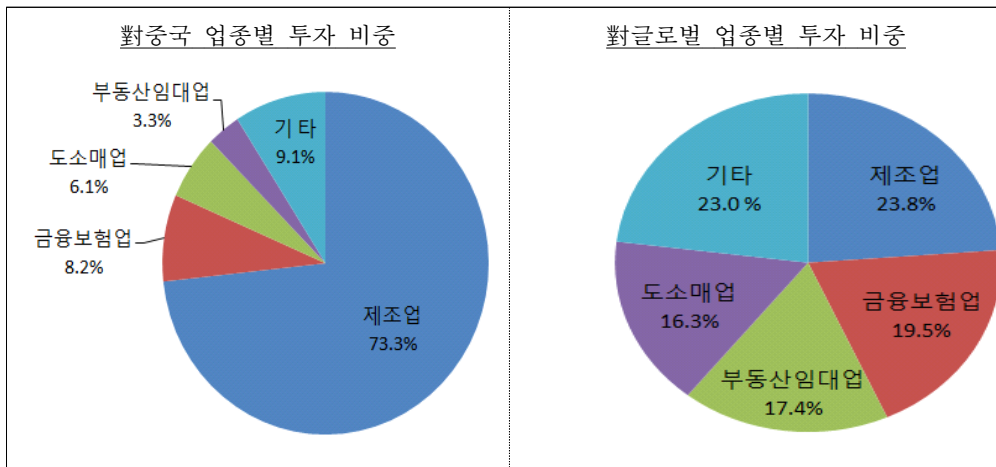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의 노령화, 도시화, 고학력화, 중국이 개방한 이후 출생한 바링허우(80년대), 주링허우(90년대) 세대의 30대에 진입 등이다. 경제 개방 이후 도시화한 환경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소비 주체들이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소비패턴의 다양화, 고급화가 나타나게 되고, 노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보건, 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수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이다.

## 2.2. 한국의 대중국 진출 유망 서비스업종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16년 말 기준 33억 달러로 2007년 56억 달러로 정점을 이룬 후 다소 감소 추세이며, 이 중 제조업 투자가 절대다수인 73.0%이

고, 서비스업 투자는 24.5%인데 2007년 이후 20% 내외에 머물러 있다 (Do and Jeon, 2017). 우리나라의 전 세계 투자 대비 중국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특히 낮은데, (Fig. 2-2 참조) Jung (2018)은 중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시장개방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Source: Do and Jeon (2017)

Fig. 2-2 Comparison of Korea's Investment Sectors in China & Global in 2016

한편, 다수의 국내 연구가 시장 개방도와 함께 중국의 정책, 산업과 인구조구조 등을 토대로 중국 진출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Lee and Hwang (2013)은 중국의 서비스업 중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적 성격으로서 서비스업 중 한국, 일본에 비해 그 비중이 작거나 증가 추세에 있는 업종으로 법률,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IT) 등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했다. 또한, 현재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개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과 밀접한 교육, 의료, 보건, 사회보장 등의 서비스업 증가를 전망한 바 있다. NO et al. (2015)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3차산업 성장률보다 높

은 성장률을 보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콘텐츠, 관광 등의 6개 서비스업을 유망업종으로 꼽았다. Jung (2018)은 법률, 의료 등 전문 서비스, 유통, 물류, 문화콘텐츠, 관광, 환경산업 등을, Jeon and Kang (2015)은 교육, 의료, 법무 등 전문 서비스와 중산층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개방화 정도와 성장성을 중심으로만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 법률시장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유망업종으로 나오지만, 국내 로펌이 중국에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중국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 중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IT서비스의 경우 2015년 이후 중국보다 우리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기에는 회의적이다. 생활밀착 서비스의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식당, 미용,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한국 개인이나 기업이 이미 활발하게 진출한 분야이기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진출 유망 서비스업종 선정이 본 연구의 주목적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과 최근 상황을 반영해 금융(은행, 보험), 의료 및 건강관리, 교육, 문화컨텐츠, 관광 등 5개 업종을 대중국 진출 유망업종으로 보고 분석한다. 동 5개 업종별 중국시장에 대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 분야는 NO et al. (2015)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은행, 보험, 주식, 외환, 보험 거래 규모 등에서 이미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2014년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수는 4,089개, 종사자 수는 376만 명, 자산총액은 172조 규모로 연평균 20%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대형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1%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보험업 수입보험료는 2014년 2조 위안을 넘어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6.2%에 달한다. 2015년 생명보험 비중 64%, 손해보험은 30% 수준이다. 2014년 현대 중국계 보험사가 90개, 외국계 보험사가 50개가 있으나, 상위 10대 보험사는 모두 중국계이다.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의 중국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4.1조 위안(한화 697조 원) 규모에 달하며, 2020년까지 약 8조 위안(한화 약 1400조 원)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로 2020년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합) 규모 예상치인 174조 원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Jung, 2018). 특히,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관련 분야와 다이어트,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증가도 예상된다 (Kim, 2016b). 한류를 바탕으로 성형, 피부미용, 치과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도 환경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에 유리한 상황이다.

문화컨텐츠 분야는 한국의 앞선 컨텐츠 제작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진출이 유망한 대표적 업종이다. Jung (2018)에 따르면 2015년 영화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64.8억 달러로 10년 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관 수는 41,000개로 미국과 유사한 규모이다. 아울러 방송컨텐츠시장은 2016년 기준 36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규모로 컨텐츠 공급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규모에서 오는 소비잠재력, 7.7억 명에 이르는 인터넷 사용자 수를 고려할 때, 중국의 문화·컨텐츠 산업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문화부는 '13.5규획 문화산업 발전계획'에서 연예, 오락, 애니메이션, 게임 등 11개 분야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Jeong, 2017).

교육 분야는 중국 전체 일상 생활 소비에서 식품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지출이며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약 7%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학제(의무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와 비 학제 교육으로 나눈다 (NO et al., 2015). 2016년 말 기준 중국 초등학생 수는 9,913만 명, 중학생은 4,329만 명, 고등학생 3,970만 명, 대학생은 3,699만 명이다 (KOTRA, 2017). 비 학제 교육은 직업기술 훈련기관, 민간경영 훈련기관이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9,600억 위안으로 어학, IT, 어린이 교육 등이다. 공교육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중고등 학생의 사교육 시장이 성장률은 30%에 이른다.

관광 분야는 2014년 관광수입액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한 569억 달러로 GDP 기여도가 10%에 달하는 중요한 업종이며, 국내 관광이 80%, 아웃바운드가 10.3%, 인바운드가 9.5%를 차지한다 (NO et al., 2015).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아웃바운드 관광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출국한 국외 여행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 2017년 중국의 여권 소지 인구가 1.2억 명으로 중국 전체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은 점, 중산층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점, THAAD에 따른 한국 단체관광 금지 이전 중국인의 해외 방문이 가장 많았던 곳이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관광시장 진출은 긍정적이다 (KITA, 2017).

### 3. 대중국 교역 거점 홍콩의 위상 변화와 중-홍콩간 CEPA

기본적으로 서비스 무역은 상품무역과 비교하면 규제가 많고 노동집약적이며 내수중심이라 대외개방이 더딘 분야이다 (Sung, 2013).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더 심하다.<sup>1)</sup> 따라서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되도록 덜 적용 받아야 하고, 적용받을 때도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피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바, 이 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거점 역할을 해온 홍콩의 위상 변화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콩과 중국을 잇는 핵심 제도적 기반인 중-홍콩 CEPA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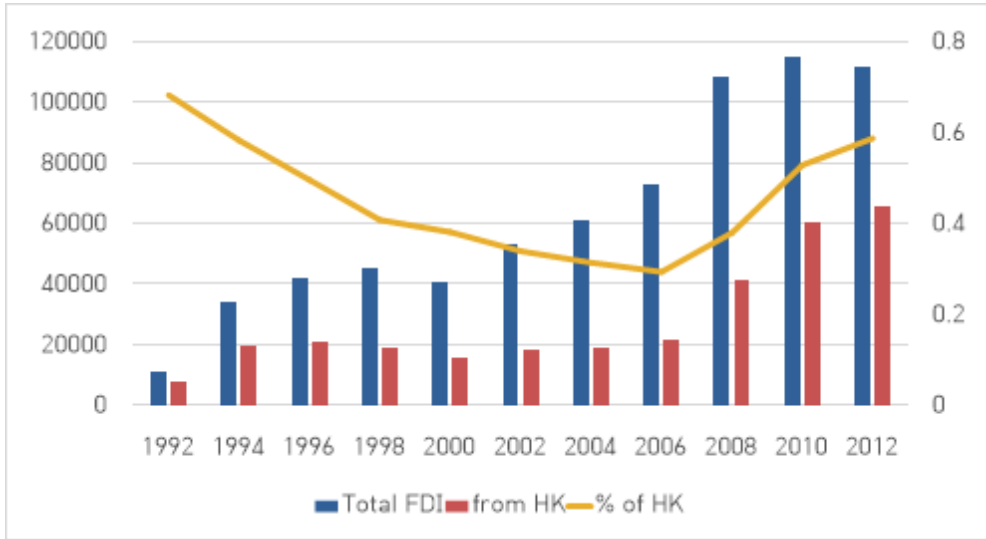
#### 3.1. 대중국 교역 거점 홍콩의 위상 변화

1978년 덩샤오핑의 개방 조치 이래 홍콩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자본의 중국진출 거점 역할을 해 왔다. 동남아 화교들의 고향 대부분이 홍콩과 가까운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이다. 이들은 중국의 개방 전까지 홍콩을 경유해 고향으로 송금과 소규모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홍콩 거주자가 공산화 이후에도 중국을 내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Sung, 1996). 덩샤오핑은 이들 동남아 화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1980년부터 홍콩 주변 지역인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에 최초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1992년 남순강화 등을 통해 광둥성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화교 자본가들은 홍콩을 경유해 이들 지역에 임가공 공장 등에 투자하면서 중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다. Park and Kim (2009)은 동남아 화교들이 홍콩을 경유해 광둥성에 투자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고향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투자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둘째, 당시 영국 식민지이자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은 신뢰할 만한 무역과 금융 등 제도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왕래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남아 국가 내에서의 화교의 지위 불안으로 자본 도피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방 초기 90년대 중국의 FDI 유입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이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이후 동남아 화교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중국과 직접 거래하거나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홍콩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중계 역할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라 홍콩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1)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22개 업종에 대한 서비스 무역 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에서 중국은 20개의 업종이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산업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서비스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Sung, 2013)

〈Fig. 3-1〉에서 보이듯이 중국 FDI 유입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68%에서 2006년에는 29%까지 하락하게 된다.



Source: UNCTAD Bilateral FDI Statistics, 2014

Fig. 3-1 Inward FDI to China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 홍콩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서 입지 회복을 위해 중국과 2003년 중-홍콩 CEPA를 체결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2006년 이후 홍콩의 대중국 위상은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 (Fig. 3-1 참조)

### 3.2. 중-홍콩 CEPA 체결과 최근 동향

중국은 영국과의 홍콩 반환협정에 외교권 및 군사권을 제외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홍콩의 고도자치를 향후 50년간 보장했다. 따라서 중국과 홍콩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국가로서는 하나지만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일국양제로, 홍콩과 중국의 거래는 국내거래가 아닌 국제거래로 규정된다.<sup>2)</sup> 중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홍콩의

지위가 그리 달갑지는 않으나, 경제적으로는 100년간 홍콩이 구축한 자유무역과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홍콩은 세계 최대 인구와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관문으로서 약해져 가는 경제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Kim, 2016a).

이러한 양측의 필요에 따라 중-홍콩 CEPA는 2001년 도널드 창 홍콩 행정장관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구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2002년 초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2003년 6월 최초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Wang, 2018). 이후 2010년까지 10차례 보충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이후 3차례의 부속 협정을 체결하며 보완됐다.

2) 이에 따라 홍콩은 WTO, APEC 등 각종 경제협

력기구 등에 중국과 별도 회원국이다.

중-홍콩 CEP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원  
활화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데, 핵심은 상품무역이  
아니라 서비스이다. 이유는 첫째, 홍콩은 80년대 이  
후 제조업의 중국 이전으로 홍콩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의 수출이 많지 않고, 둘째, 수입품은 자유무역  
항으로서 CEP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  
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으로 보인다 (Yeo and Park, 2012). 만약 해외 제조  
기업이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수출하면서 중-홍콩  
CEPA의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홍콩에서 임가공을  
통해 부가가치의 약 30% 이상을 추가해야 하는데,  
세계 최고수준의 홍콩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경우  
실익은 거의 없다.

중-홍콩 CEPA 서비스 부문은 2003년 포지티브 방  
식을 통해 경영자문, 회계, 은행 등 18개 분야를 시  
작으로 매년 개방폭을 늘여 2013년 10차 보충협정까  
지 개방된 분야는 총 48개로 늘었다 (Yeo and Park,  
2012). 한편, 2008년부터 중국은 홍콩에 인접한 광동  
성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적인 서비스 개방 조치(Pilot  
liberalization measures)를 시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갔다. 2014년에는 이를 확대하  
여 부속 협정으로 <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 이  
하 ‘광동협정’ 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의미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 CEPA 서비스 부속서  
와는 달리 해외 직접 진출 방식인 상업적 주재에 대  
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134개 분야에 대해 132  
개의 제한조치 이외에는 홍콩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광동성에 진출시 중국기업과 동일한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기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된 자유화 조치들과 네거티브 방식  
이 충돌할 경우 광동협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WTO 기준 총 153개의 서비스업종에 대해 광동성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 개방 조치를 하게 되었다

(Wang, 2018).

이후 1년이 경과한 2015년 11월 중국과 홍콩은 광  
동협정의 적용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상  
업적 주재에 대한 12개 제한조치를 삭제하며, 기존  
포지티브 리스트에 통신과 문화 부문에 28개의 자유  
화 조치를 추가하여 <중-홍콩 CEPA 서비스 협정  
(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을 체결하게  
된다. 이로써 상업적 주재모드는 134개 업종에 대해  
120개의 제한조치 외에는 중국 전역에 내국민 대우  
가 적용되었다. 홍콩 정부 내 통상담당 부서인 공업  
무역서의 CEPA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발효  
된 서비스 협정은 기본적으로 홍콩과 중국 간 서비  
스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WTO 기준 160개 서비스 분야 중 153개를 개방하여  
개방률은 95.6%에 이르러 그간 중국이 체결한 14개  
무역협정 중 가장 개방 폭이 크다. (TID, 2017).

이렇게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개방하지 않던 서비  
스 분야를 홍콩에 대폭 개방한 것은 첫째, 기본적으  
로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통합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홍콩의 선진 서비스산업을 접  
목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Yeo  
and Park (2012) 또는 im and Park (2016)과같이 중-  
홍콩 CEPA 관련 선행 연구들이 중-홍콩 CEPA 양허  
표를 분석하며 한-중 FTA 서비스 후속 협상 시 참  
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콩과 한국을 이  
런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향후 중국이 홍콩과  
의 CEPA와 유사한 서비스 시장개방을 한국에 할 것  
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Wang,  
2018).

본 논문에서는 CEPA에서 한-중 FTA 협상의 시사  
점을 끌어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 중-  
홍콩 CEPA를 이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것은 기본적으로 중-홍콩 CEPA에서 홍콩에 진출한  
외국기업이라도 어렵지 않게 홍콩서비스 공급자  
(Hong Kong Service Supplier; HKSS)의 자격을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HKSS 자격 획득을 위한 방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 CEPA에서 규정된 대로 서비스 분야별로 HKSS 자격 요건 즉, i) 홍콩에 진출해 법인을 설립하고 업종별로 3-5년간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을 유지하며, ii) 홍콩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iii) 직원의 50% 이상을 홍콩 거주자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중국과 홍콩시장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중국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홍콩지역에서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홍콩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3-5년의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거나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는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 등이 결합된 제조업과 달리 짧은 시간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복제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소멸하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염두에 두었던 사업이 이 기간이 지나고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이러한 자격을 갖춘 홍콩기업을 인수하거나 JV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TID, 2017). 이 방법의 장점은 빠른 시간에 HKSS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홍콩에 기반이 없는 한국기업이 적합한 홍콩기업을 찾아서 인수하거나 JV를 설립하는 것이 정보의 부족 등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4. 홍콩 경유 대중국 진출 전략의 비교우위 검토

본 장은 이 연구의 중심으로 한국 서비스기업이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에 비해 홍콩을 경유해 진출하는 방안의 비교우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홍콩 경유 중국진출의 비교우위는 첫째, 한국기업이 중국

에 진출할 경우 적용받는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분과 둘째, 비즈니스 전략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4.1 제도적 측면: 중-홍콩 CEPA 활용 시장접근 확대 및 규제 회피

홍콩 경유 중국진출의 제도적 비교우위는 중-홍콩 CEPA를 이용한 시장접근 확대 및 규제 완화 효과 측면에서 발생한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직접 진출할 경우 적용받는 한-중 FTA와 홍콩을 경유해 홍콩서비스 공급자 (Hong Kong Service Supplier; HKSS) 자격으로 중국에 진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중국-홍콩 CEPA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장접근 확대 및 규제 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밝혀 둘 것은 두 협정은 협정방식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2015년 12월 발표된 한-중 FTA 서비스 부문에는 일반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인 GATS 방식을 따라 WTO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모드 1(국경 간 공급), 모드 2(해외소비), 모드 3(상업적 주제), 모드 4(서비스 인력의 이동)로 구분하여 개방(commit)하는 조치(Measure)가 기재되는 포지티브 방식인 반면, 중-홍콩 CEPA 서비스 협정은 모드 1과 모드 2, 모드 4를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국경 간 서비스(Cross-border service)’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개방 조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지만, 모드 3(상업적 주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 조치(Reserved Restrictive Measure)만 열거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허표에 나타난 사항들만 비교한다면 올바른 비교가 될 수 없고 중국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중 FTA 서비스 챕터는 WTO GATS의 155개 분야를 기준으로 구분하나, 중-홍콩 CEPA 서비스는 이에 5개 분야(물

류, 전문가 및 기술인력 자격시험, 특허대리업, 상표 대리업, 개인 자영업)를 추가해 모두 160개 분야를 기준으로 한다 (Yeo and Park, 2012). 따라서 세부 업종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고 두 협정을 개괄적으로 비교하면, 시장개방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홍콩 CEPA의 범위가 훨씬 넓다. 우선 한-중 FTA 서비스 챗터가 일부라도 개방하는 분야는 모두 90개 분야이다. 이 중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 프로세싱 등 6개 업종에 대해 완전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중국의 2005년 WTO GATS 수정 양허표와 비교하면 완전히 개방한 6개 업종과 일치하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적 개방 조치는 없다. 일부 개방한 업종은 84개인 바, 중국의 GATS 수정 양허표와 비교할 경우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추가로 개방한 것이 전부다. 중국의 GATS 수정 양허표 대비 개방을 확대한 것은 17개 업종이고, 59개 업종은 그대로, 기타환경, 은행/기타금융, 항공서비스 등 8개 업종은 제한사항을 오히려 강화했다. (Kim and Lee, 2015).

반면, 중-홍콩 CEPA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 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바, 전체 160개 서비스 분야 중 153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중-홍콩 CEPA 서비스는 협정문 제4조에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를 명시하고 있어 협정문상 기재된 분야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GATS 수정 양허표 이상의 개방수준이다. (Table 4-1. 참조)

그러나, 단순히 개방 조치의 숫자만으로는 구체적 시장개방 정도를 검토하기 어렵고 업종별로 실제 어떤 부분이 개방되었는지 심도 있게 비교해야만 한다. 본 절에서는 양 협정의 서비스 부문 양허조치를 모든 업종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보다 2장에서 선정한 중국진출 유망 분야인 금융(은행, 보험), 의료 및 건강관리, 문화컨텐츠, 교육, 관광 5개 분야에 한정하여 중국내 관련 법령 및 양 협정문상 양허표

들을 비교하여 검토한다.<sup>3)</sup>

Tab.4-1 Comparison of Openness in Korea-China FTA and China-Hong Kong CEPA

	한-중 FTA	중-홍콩 CEPA (상업적 주재 기준)
완전 개방	6	62
일부 개방	84	72
GATS +	17	72
GATS	59	
GATS -	8	
개방 업종합계	90	134

Source: Kim and Lee(2015) and Trade Industry Department, HKSAR

#### 4.1.1. 금융(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중-홍콩 CEPA는 한-중 FTA에 비해 중국 내 설립요건의 완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국내법령상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 주주의 총자산 요건은 최소 100억 달러, 외국은행 분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 주주의 총자산 요건은 최소 200억 달러이다.<sup>4)</sup> 한-중 FTA는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홍콩 CEPA에는 동 형태의 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 주주의 총자산 규모를 최소 60억 달러로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위 세 가지 형태가 아닌 대형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3) 홍콩 공업무역서(Trade Investment Department; TID) 웹사이트 (<https://www.tid.gov.hk/english/cepa/index.html>)에서 중-홍콩 CEPA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표 및 중국의 관련 법령 정보를 참조함.

4) 외국금융기관 중국 투자 관리방법(境外金融机构投资入股中资金融机构管理办法) 2003)

신탁회사, 금융리스회사 등 다른 형태의 은행은 한-중 FTA에는 개방되지 않았으나, 중-홍콩 CEPA에는 모두 개방되어 있다. 외국 금융기관 주주 자본금 규모도 농촌신용사, 신탁회사, 금융리스회사는 중국 국내법과 동일한 수준인 10억 달러지만, 이보다 대형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등에 대해서는 중국법상 요건인 1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의 자산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모든 형태의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외국 투자자의 지분율에 대해 1개 외국 투자자의 지분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전체의 지분율은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현지 통화 관련 업무 신청 자격 요건으로 현지에서 3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2년 연속 수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홍콩간 CEPA에는 그러한 규제가 없다.

업무 영역에서도 한-중 FTA에는 예금 등의 인수, 소비자 대출 등 여신업무, 금융리스, 신용카드 등의 지급 및 송금 서비스, 보증 및 약정, 외국환 거래, 그 밖의 금융정보 처리, 신용조회 분석 및 자문 등만 허용되어 있다. 반면, 중-홍콩 CEPA에서는 앞서 언급한 업무 외에 에이전트로서의 증권 발행, 언더라이팅 업무, 머니 브로킹, 자산관리, 금융자문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제한된 범위<sup>5)</sup>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5) 예를 들면, 외국은행 지점은 에이전트로서 증권 발행, 언더라이팅, 지불대행, 은행카드 업무가 불가능함을 네거티브리스트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다시 해석하면 외상 독자은행, 중외합작은행은 이러한 업무에 제한이 없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ab. 4-2 Comparison of Bank and Other Financial Service sector in Korea-China FTA an China-Hong Kong CEPA

구분		한-중 FTA	중-홍콩 CEPA
금융 기관 설립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작은행 외국은행 지점	설립 외국금융기관의 총자산 100억달러 이상 지점은 200억달러 이상	설립 외국금융기관의 총자산 60억 달러 이상
	상업은행, 우정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신용사, 신탁회사, 금융리스사	규정 없음(미개방)	설립 외국금융기관의 총자산 60억 달러 이상
		규정 없음(미개방)	설립 외국금융기관의 총자산 10억 달러 이상
	지분 요건	규정 없음(미개방)	단일 외국금융기관의 지분 20% 초과 금지 전체 외국금융기관 지분 25% 초과 금지
업무 범위	가능 업무	예금, 대출, 금융리스,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은행수표 포함 지급 및 송금 서비스, 보증 및 약정, 외국환 거래, 비은행 금융기관 자동차 파이낸싱, 금융 부수서비스	예금, 대출, 금융리스,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은행수표 포함 지급 및 송금서비스, 보증거래 및 약정, 외국환 거래, 자동차 파이낸싱 에이전트로서의 증권 발행, 언더라이팅 업무, 머니 브로킹, 자산관리, 부수 서비스
	위안화 비즈니스	3년 이상 사업운영 및 2년 연속 흑자	제한 없음

Source: Korea-China FTA Annex 8-A-1 and China-Hong Kong CEPA Annex 1

#### 4.1.2 금융(보험)

중국 법령상<sup>6)</sup> 보험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보험사는 30년 이상의 업력이 있고, 중국 내 대표처를 설립한 후 2년 이상 운영하며, 총자산 규모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되는 보험사 지분율은 2018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시책(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상 생명보험의 외자 비율은 51%를 초과할 수 없으나, 손해보험사는 100%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30년 이상의 업력, 총자산 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외국 보험중개사가 2년 이상 대표사무소를 운영한 이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sup>7)</sup> 보험대리사는 유

6) 외자보험공사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險公司管理條例) (2013년)

7) 중국보험감독회의의 외국보험사 대표처 관리에 관

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설립하되, 설립자본금 5천만 위안 이상으로 규정하고, 설립 주체인 외국보험대리사의 업력이 20년 이상이며, 2년 이상 중국에서 대표사무소를 운영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는 중국 국내법과 비슷한 수준의 개방도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중외합작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지분을 50%까지 허용되며, 손해보험사는 100%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중외합작, 100%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중국 내 지점 설립도 가능하다. 한-중 FTA에서는 별도의 설립자본금과 업력 등에 대한 요건이 없는데, 포지티브 방식인 점을 감안하면 앞서 언급된 중국 내 외국 보험사 및 보험중개사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사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홍콩간 CEPA에서는 중국 국내법은 물론, 한-중 FTA보다 완화된 설립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보험회사의 경우 홍콩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50억 달러로 동일하나, 그룹 내 1개사의 업력만 30년 이상이 되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과하고 있다. 지분율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에 대해 당초 50%의 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전술한 2018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에 따라 51%의 지분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sup>8)</sup> 이로서 외국 보험사가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중개사 설립의 경우 홍콩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의 자본금 규모를 2억 달러로 정하여 다른 외자 보험중개사와 비교하여 다른 혜택은 없다. 보험대리사(Insurance agent)의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을 국내 규정 5천만 위안(약 73천 달러)에서 50만 홍콩달러(미화 약 63천 달러)로 완화하였고, 설립 신청 외국 보

험대리사의 업력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외자 보험사의 경우 재산보험(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 보험, 개인보험)과 생명(人壽)보험(건강보험, 사고 상해 보험 등) 그리고 관련 재보험이 허용되어 있고 개별 외자 보험사의 업무 범위는 중국 보험감독원의 허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중 FTA상 한국 보험업자가 설립한 외자 보험사의 업무 영역으로 건강보험, 개인/단체보험, 공/사적 연금보험, 재보험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손해보험 업자는 완전한 범위의 손해보험 제공이 허용되어 있다.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이에 대한 재보험 중개, 국제해상·항공 및 운송보험과 이에 대한 재보험 중개가 허용되어 있다.

중-홍콩 CEPA는 상업적 주재 모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홍콩 보험회사, 보험 중개회사 및 보험 대리회사의 업무에 대해 언급이 없으므로 중국회사가 하는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재보험에 대해서는 CEPA 부속서에 “중국보험감독위원회(Chinese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CIRC)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보험과 자산의 매수와 처분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CIRC는 이미 외자보험 공사관리조례 제17조에 외자보험회사가 재보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자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더불어 한-중 FTA와 비교 시 눈에 띄는 부분은 홍콩보험사의 기존 중국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 가능 여부이다. 한-중 FTA에는 기존 중국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해 언급이 없으므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중-홍콩 CEPA에는 홍콩의 보험사가 중국 보험사의 지분 취득이 지분을 24.9%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홍콩 CEPA에서 국경 간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포지티브 리스트에도 눈에 띄는 주요한 조치들이 있다. 홍콩 거주자로서 보험계리 등 자격증을 취득

한 사항 통지(中国保监会关于适用<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若干问题的解释)的通知, 2008년)

8) 중-홍콩 CEPA의 최혜국 대우(MFN) 조항에 따라 자동 적용됨.

한 사람은 중국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홍콩에 중국 보험 관련 자격증 시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발달된 홍콩의 보험업에 종사하는 홍콩인들의 중국 유입을 통해 중국 보험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Tab. 4-3 Comparison of Insurance sector in Korea-China FTA an China-Hong Kong CEPA

구분	한-중 FTA	중-홍콩 CEPA	
보험사 설립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외국보험사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 30년 이상 업력 (그룹내 1개사) - 2년 이상 대표사무소 운영 - 생명보험: 합자(50%)만 가능 - 손해보험 100% 가능	- 외국보험사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 30년 이상 업력 (그룹내 1개사) - 그룹내 1개 대표사무소 2년 이상 운영 - 생명보험 51% 초과 금지 - 손해보험 100% 가능 - 광동자유무역시험구내 설립된 홍콩보험사 지사는 중국회사 간주
	보험중개사	- 설립 외국 보험 중개사의 총자산 2억 달러 이상 - 30년 이상 업력 보유 - 2년 이상 대표사무소 운영 - 100% 자회사 가능	- 설립 외국 보험중개사의 총자산 2억 달러 이상 - 30년 이상 업력 - 2년 이상 대표사무소 운영 - 광동 자유무역시험구내 설립된 홍콩보험중개사 지사는 중국회사 간주
	보험대리사	- 규정 없음 (미개방)	- 3년 이상 평균 영업이익 50만 홍콩달러 이상 - 총자산 50만 홍콩달러 이상 - 10년 이상 업력 - 광동 자유무역시험구내 설립된 홍콩보험중개사 지사는 중국회사 간주
업무 범위	보험회사	- 건강보험, 개인/단체보험, 공/사적 연금 보험 재보험	- 제한 없음 -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지분을 상한 24.9%)
	보험중개사	-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 및 재보험 중개 -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	- 제한 없음
	보험대리사	- 규정 없음(미개방)	- 제한 없음

Source: Korea-China FTA Annex 8-A-1 and China-Hong Kong CEPA Annex 1

### 4.1.3.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중국의 의료관련 서비스는 중국정부가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와 달리 일찍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 의료기관에도 중국내 의료기관 설립이 개방되어 있다 (Kim, 2016b). 중국 의료기관은 소유 형식 및 영리성 여부 따라 국영 의료기관과 중국 민영병원, 그리고 외자 민자병원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는 의원과 최소병상 20개와 의사 3명 이상인 1급 병원, 병상 100-499개와 3인 이상의 부주임 의사 및 각 과 전문의 1인이 있는 2급 병원, 병실 500개 이상 및 각 과에 전문의와 부주임이 있는 3급 병원으로 나누고 있다 (NO et al., 2015).

외자 민자병원은 2000년 제정된 <중의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임시방법 (中外合資、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辦法)>이라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급 이상의 병원을 설립조건으로 하되, 외국 측 투자자는 법인에 한한다. 투자총액은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 측 투자자의 최대지분은 70% 미만, 중국 측 파트너의 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추가로 <외상독자병원 시범 업무 실시에 대한 통지(關於開展設立外資獨資醫院試點工作的通知)>를 시행하여 북경시, 천진시, 상하이, 강소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7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신규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Kim, 2016b). 의료진은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과반수를 중국인으로 해야 한다.

한-중 FTA에서는 전술한 중국 국내 법령의 개방 조치 외에 추가적인 개방 조치가 없다. 구체적으로 상업적 주체 모드에 ‘의료 및 치 의료서비스’ (사실상 2급 이하의 병원)만을 개방하였으며, 중국의 수요에 따른 양적 제한을 조건으로 중국 파트너와 합작 투자병원 또는 진료소 설립이 허용된다.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중국 국내법을 따라 앞서 기술한 투자총액과 지분율, 의료기관 인력 비중이 적

용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요에 따른 양적 제한 조건, 설립 신청 외국 의료기관의 우수성 등 정량적 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제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홍콩간 CEPA에서는 개방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의료기관 종류도 개인 클리닉부터 3급 병원까지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주체는 병원급 이상은 법인으로 한정하며, 1인 클리닉은 홍콩 의사면허로 5년간 홍콩에서 진료경험이 있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설립방식은 1인 클리닉은 독자설립이 원칙이며, 병원급 이상도 100% 독자설립이 가능하다. 최소 투자액은 2급 병원은 2,000만 위안, 3급 병원은 5,000만 위안이다. 독자 외자병원 설립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 제한도 홍콩서비스 공급자에게는 2012년 3월 이미 철폐하였다.<sup>9)</sup> 이에 따라 홍콩서비스 공급자는 100% 소유 외자병원을 중국 전역에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홍콩 서비스공급자가 설립하는 독자 외자병원은 중국 국내법규와는 반대로 의료진 중 홍콩 거주자가 50% 이상 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중국 내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되어 있다. 한-중 FTA에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어, 한국 의사는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중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홍콩 CEPA에서는 의사의 간호사, 조산사, 전문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촬영기사, 물리치료사, 척추지압사 등 의료 보조 인력도 중국 내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도 최장 3년까지 허용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병원에서 의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보조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홍콩의 병원이 그대로 중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인다. 의사면허시험에도 홍콩의 사면허를 소지한 홍콩 영주권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사면허 소지자는 중국 대학에서 관련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중국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홍콩 CEPA에는 병원이 아닌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도 상업적 주재 모드로 개방된 바, 구급차 서비스, 주거형 건강시설(Residential Health Facilities), 병리학과 세균학 등 기타 건강서비스(Other Human Health Service), 수의(동물진료) 서비스가 그것이다. 동 서비스들은 유전자 정보, 혈액 수집, 그리고 병리데이터 처리 등 공익을 해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외하고는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 조치가 적용된다.

Tab. 4-4 Comparison of Medical and Health Care sector in Korea-China FTA an China-Hong Kong CEPA

구분	한-중 FTA	중-홍콩 CEPA	
의료 기관 설립 관련	2급 병원	- 2천만위안 이상 투자 - 합자 또는 합작 형태 (지분제한 70%) - 의료진 50% 이상 중국인	- 2천만위안 이상 투자 - 합자, 합작, 독자 설립 - 독자설립시 의료진 50% 이상 홍콩인
	3급 병원	- 미개방	- 5천만위안 이상 투자 - 합자, 합작, 독자 설립
	개인 병원	- 규정 없음 (미개방)	- 개인 독자설립 - 홍콩의사면허 보유자로 5년이상 경력
의료 기관 업무 관련	업무 범위	- 의사의 단기 진료 (6개월~1년)	- 의사의 단기진료 (최장3년, 연장 가능) - 의료보조인력 업무 (간호사, 조산사, 전문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척추지압사) (최장 3년, 연장 가능)
	자격시험	- 규정 없음 (미개방)	- 홍콩 의사면허 소지자는 중국 의사면허 응시가능
기타 건강 서비스	개방범위	- 규정 없음 (미개방)	- 엠블런스 서비스 - 주거형 건강 시설 - 기타 건강 서비스 (유전 및 질병정보, 혈액 수집 제외) - 수의사 서비스

9) 홍콩·마카오 독자설립병원 범위 확장에 대한 통지(香港和澳門服務提供者在內地設立獨資醫院地域範圍的通知, 2012년)

Source: Korea-China FTA Annex 8-A-1 and China-Hong Kong CEPA Annex 1

#### 4.1.4. 문화컨텐츠

중국 내에서 문화컨텐츠 분야는 대부분 영역이 외국기업 진출이 금지된 미개방 분야이다.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개방 규정은 <문화영역 외자유치에 관한 의견(文化領域引進外資的若干意見, 2005)>,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 등이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외국업체가 뉴스기관, 방송국, TV, 라디오 프로 제작, 영화제작회사,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문화공연 단체, 영화 수입 및 배급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간행물, 전자출판, 음반, 영상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라디오, TV 프로그램 등의 수입업무는 정부(문화부, 광전총국 등)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국유 문화기관만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방송제작사가 외국과 합작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전총국에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화관은 <외국업체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2015>에 따라 합자 또는 합작으로 외국업체와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 측 투자비율이 5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내 영화관에는 스크린 쿼터를 적용, 전체 상영분의 2/3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한-중 FTA에서는 영화를 제외한 컨텐츠 배급회사 및 영화관 설립을 합작의 형태 (한국 측 지분 49%까지)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속서로 <영화 공동제작>,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이 별도로 있다. 공동제작된 영화는 중국 제작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각국 법령에 따라 공동제작을 장려하며, 이에 대한 협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공동제작된 제작물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한편, 한국영화의 중국 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20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중-홍콩 CEPA는 한-중 FTA보다 개방의 범위가

훨씬 넓지만, 이 분야의 국내적 민감성을 감안해 다른 분야와 달리 상업적 주체에 대해서도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및 컨텐츠 제작사와 배급사, 영화관 모두 합자, 합작 외 100% 독자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홍콩이 제작한 중국어 영화는 저작권 50% 이상을 중국이 보유하고, 제작진의 50% 이상이 홍콩 거주민이라는 조건하에 수입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홍콩 합작 드라마는 중국산 드라마와 동등 대우받을 수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홍콩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폭 개방을 하고 있다. 즉, 인터넷에서 음악, 영상과 기타 컨텐츠, 온라인 게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을 칭하는 ‘인터넷 문화단위(互聯網文化單位)’를 홍콩기업이 중국과 합자 또는 합작으로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10)</sup>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7.7억 명을 돌파하면서 중국인터넷 컨텐츠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반면, 중국의 인터넷 컨텐츠 규제가 매우 엄격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인터넷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보인다.

Tab. 4-5 Comparison of Culture and Contents sector in Korea-China FTA an China-Hong Kong CEPA

구분	한-중 FTA	중-홍콩 CEPA
영화제작	- 제작사 설립 불가능(미개방) - 합작영화 제작 허용 및 중국영화와 동일 취급	- 제작사 독자(100%) 설립 가능 - 홍콩제작 영화 수입쿼터 미포함
영화 등 컨텐츠	- 제작사 설립 불가능(미개방) - 합자 제작 장려 규정 (배급, 방영에 별도대우 X)	- 제작사 독자(100%) 설립 가능 - 중국 제작물과 동일 대우
배급	- 배급사 설립 불가능(미개방)	- 배급사 독자(100%) 설립 가능
영화관	- 합자모만 설립 가능 (최대지분 49%)	- 독자 설립(100%) 가능

10) 인터넷문화단위는 영리성과 비영리성으로 나뉘는 바, 영리성을 가진 인터넷문화단위를 ‘經營性互聯網文化單位로 칭함. 자세한 관련 규정은 <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 참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제공	인터넷문화단위 설립 불가능 (미개방)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 가능 (합자, 합작) 제작, 배급 및 서비스 가능
	온라인 게임	인터넷문화단위 설립 불가능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 가능 (합자, 합작) 제작만 가능, 배급은 불가

Source: Korea-China FTA Annex 8-A-1 and China-Hong Kong CEPA Annex 1

#### 4.1.5.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에 대한 중국 내 법령은<sup>11)</sup> 외국 교육기관은 중국교육기관이 주도<sup>12)</sup>하는 합작형태로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이 가능한 학교는 고등학교, 기술학교 등 중등교육기관과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취학 전 유아 교육기관 등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 학교 및 종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영역의 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다. 비 학제 직업 기능 교육 및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sup>13)</sup>에 대해서는 외국 교육기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국경 간 교육 서비스(모드 2)는 미개방이다.

한-중 FTA에서는 2005년 중국의 GATS 수정 양허표와 유사하다. 외국인 다수 지분 합작형태로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립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그 밖의 서비스로 교육서비스를 일괄해서 포함하고 있으며, 경찰, 행정 등 특수영역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교육서비스를 위한 한국인의 중국 내 입국(모드 4)도 중국 내 교육기관에 고용되거나 초청받았을 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국경 간 서비스 공급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개방이 되지 않

은 상태이다.

중-홍콩 CEPA는 정규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한-중 FTA와 유사하다. 즉, 홍콩 교육기관이 중국 내에서 중국인 대상 초등, 중등 의무교육기관과 중등, 고등, 성인 및 직업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학제 교육기관은 합작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군사, 경찰 등의 특수영역 교육기관은 설립이 불가능한 것도 한-중 FTA와 같다. 그러나 성인 교육과 기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 군사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한사항을 언급하지 않아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100% 소유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 교육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기업이 대부분 학원 등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학교의 설립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교육기관의 독자 설립이 가능하며, 특히 광둥지역에 설립된 중등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국적자의 자녀뿐 아니라 해외 거주 중국인 자녀, 해외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중국인의 자녀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둥성에 소재하는 대학은 홍콩인을 중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im and Park (2016)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 형태는 입시학원, 영어학원, 사무 실무 교육, 경영 관련 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교, 에듀박스, 능률영어 등 일부 상장된 교육 기업은 이러닝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대규모 자본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 규모로 성장 가능한 분야가 이러한 학원 형태의 이러닝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분야가 중-홍콩 CEPA의 적용을 받게 되어 100% 독자경영이 가능하면 장래 중국 파트너와의 분쟁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 중외합작학교조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

12) ‘중국교육기관이 주도’는 i) 교장이나 행정책임자가 중국인이며 ii)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 측의 비중이 과반수임을 뜻함.

13) 국제학교 설립규정은 国家教育委员会关于开办外籍人员子女学校的暂行管理办法



Tab. 4-6 Comparison of Education Sector in Korea-China FTA an China-Hong Kong CEPA

구분	한-중 FTA	중-홍콩 CEPA	
학제 교육	의무교육 (초등, 중등)	합작 설립만 가능 (외국인 다수지분 가능) 경찰 등 특수분야 제외	합작 설립만 가능 (외국인 다수지분 가능) 경찰 등 특수분야 제외
	중등/고등	합작 설립만 가능 (외국인 다수지분 가능) 경찰 등 특수분야 제외	합작 설립만 가능 (외국인 다수지분 가능) 경찰 등 특수분야 제외 광둥성 대학 홍콩인 입학가능
국제학교	독자 설립도 가능 외국인만 입학 가능	독자 설립도 가능 광둥성내 외국인학교에 중국인 자녀 입학 가능	
비학제 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합작설립만 가능 (외국인 다수지분 가능)	독자 설립도 가능
	교육지원	합작설립 가능 (외국인 다수지분 가능)	독자설립 가능

Source: Korea-China FTA Annex 8-A-1 and China-Hong Kong CEPA Annex 1

#### 4.1.6. 관광(여행알선) 서비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여행사 설립 및 경영에 관한 법령은 독자, 합자, 합작의 형태로만 설립 가능하며, 등록자본금 기준은 30만 위안 이상이다. 14) 업무범위는 중국으로의 인바운드 업무는 허용하나 중국 밖으로의 아웃바운드 업무는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엄청난 관광인구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외국기업에 핵심 업무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중외합자 여행사에 대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한 이후 2017년 11개 자유무역 시험구로 개방조치가 확대 중이다.

한-중 FTA에서는 관광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내국인 대우

(National Treatment)를 하고 있으나, 한국기업의 상업적 주재 모드에 대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비스 분야가 아닌 제17장 경제협력 챕터에서 중국은 한국관광회사의 중국 내 아웃바운드 업무에 대한 시범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홍콩 CEPA에서는 한-중 FTA 대비하면 홍콩기업이 100% 소유한 독자 여행사 5곳을 지정, 중국 관광객의 아웃바운드 여행업무를 허용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i) 2010년 일본-중국 간 합자, 미국-중국 간 합자회사에 이미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NO et al., 2015), ii) 한-중 FTA에 향후 한국관광회사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 승인 방침을 표명한 점, iii) 아웃바운드 업무를 할 수 있는 홍콩 독자 설립 여행사 5개소로 한정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개방도 차이만을 가지고 한국기업이 홍콩을 경유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 4-7 Comparison of Tourism sector in Korea-China FTA an China-Hong Kong CEPA

구분	한-중 FTA	중-홍콩 CEPA
여행사	설립 제한 없음 아웃바운드 업무 금지	설립제한 없음 아웃바운드 업무 가능한 독자 설립 여행사 5개로 제한
가이드	미개방	- 홍콩거주자에 대해 가이드 시험 응시 가능

Source: Korea-China FTA Annex 8-A-1 and China-Hong Kong CEPA Annex 1

#### 4.2. 비즈니스 전략 측면

중-홍콩 CEPA 활용 이외의 측면에서도 홍콩을 활용한 중국진출은 여러 가지 전략적 장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i) 조세제도 차이 활용과 ii) 홍콩의 대중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비즈니스 리스크 경감을 논하고자 한다.

14)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 2009

첫째, 홍콩-중국 간 이중과세 방지조약과 한국-중국 간 이중과세 방지조약, 그리고 각국 법인세법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상술하자면 홍콩과 중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진출한 법인이 홍콩의 모회사로 배당할 경우 중국에서 부과되는 원천 징수되는 5%의 배당세 외에는 홍콩에서 배당세를 내지 않는다.<sup>15)</sup> 홍콩은 역외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만약 한국기업이 중국에 직접 진출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분에 대해 중국에서 부과되는 원천징수되는 5%의 배당세 외에 한국의 거주지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 모회사의 법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율 20% (200억 원 이하) 또는 22% (200억 원 초과)를 납부해야 한다.<sup>16)</sup> 동일한 조약에 따라 유사하게 중국 내 자회사가 홍콩의 모회사에 로열티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중국은 최대 7%까지 과세할 수 있으나, 모회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중국이 과세할 수 있다. 즉, 홍콩을 경유할 경우 한국에서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 상당한 부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조세제도 차이는 홍콩 법인에서 한국 본사로 배당금 등을 재송금하면 사라지는 부분이나, Lim and Moon (2017)은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국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이윤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홍콩을 경유하는 각종 거래에서의 오버프라이싱 (over pricing) 또는 언더프라이싱 (under pricing)을 통해 국내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홍콩에 의도적으로 남기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Park and Kim, 2009). 이

는 홍콩의 2018년 개정된 법인세가 과표 200만 홍콩 달러 미만의 경우 8.25%, 그 이상일 경우 16.5%로 국내의 법인세와의 차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국내에서는 조세회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홍콩에서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 이들의 대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중국에 진출했을 경우보다 중국 내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영국식민지 유산으로 홍콩의 기업가들은 몸에 밴 계약중심의 합리적 사고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친인척이나 고향 지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Park and Kim, 2009). 최근에는 더 나아가 홍콩 기업가들이 자신들이 투자하는 해당 지방정부 관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해당 지방정부의 다양한 자문기구 또는 중국 중앙정부 최고의 정책자문회의체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약칭 정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부딪히는 정부/지방정부 관료들의 자의적 법 집행이나 현지 관계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Smart and Smart, 2017).

## 5. 토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의 하나로서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중국이 대외에 개방하지 않은 분야에 시장접근이 가능하거나 외국기업에만 적용하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 중국 진출 유망 서비스업종 5개에 대해 한국기업이

15)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HKSAR, 2015)

16) 한국-중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소재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경우 배당세는 5%를 중국이 징수하고(한국에서 세액공제), 지분 25% 미만이면 배당세는 10% 징수한다(National Tax Service, 2010).

홍콩에 직접 진출할 경우 적용받게 되는 한-중 FTA와 중-홍콩간 CEPA를 비교하면서 홍콩 경유 중국진출이 가지는 장점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5개 분야 중 금융(은행, 보험), 의료 및 건강관리, 문화콘텐츠, 교육 서비스는 중-홍콩 CEPA를 활용할 경우 개방도가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광 분야는 실익이 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세 및 홍콩 기업인들이 가지는 인적 네트워크 대중국 서비스 진출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다. 중-홍콩간 CEPA 관련 국내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한-중 FTA 서비스 부문을 체결하는데 참고할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여, 한국기업이 중-홍콩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는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 2015년 말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시하기로 협의하였고, 실제 양국 통상당국은 2018년 7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그간 중국이 외국과 맺어온 FTA 서비스 협상이 모두 포지티브 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에 대한 개방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홍콩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과 홍콩의 앞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경험이 중국의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이 중-홍콩 CEPA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Wang, 2018). 따라서 앞으로 있을 한-중 FTA 서비스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홍콩을 경유한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진출은 유망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영화관, 물류 등의 분야에 중-홍콩 CEP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서비스기업들이 일부 있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들 사례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향후 중국진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후속 사례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서비스기업에 대해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진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담당하는 부서와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하나의 정부 부처에 속해 있기에 한-중 FTA를 대신 중-홍콩 CEPA를 활용하라고 지원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Reference

- [1] Do, H. and Jeon, K. (2017). Korea's Investment in China and Response Strategy to New Normal.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sue Report., 2017-FDI-1 (도현철, 권기영 (2017).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 수출입은행 이슈리포트, Vol. 2017-FDI-1)
- [2] Government of HKSAR (2015). The Fourth Protocol to the Arrangement betwee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nline]. Available: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12AY@2006-10-27T00:00:00> [Accessed 22. Aug. 2018].
- [3] Jeon, I. and Kang, T. (2015). Review and Forecast on the Progress of Servitization of Chinese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0 (전익호, 강태현 (2015).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5(20).)
- [4] Jeong, D. S. (2017). China's Promising Industry in Terms of the Three Major Economic Keywords of

- President Xi's Second Term. KOTRA. KOCHI 15 (정도숙. (2017). 시진핑 2기경제 3大 키워드로 본 중국의 유망산업 현황과 시사점. KOTRA. KOCHI-17-015 )
- [5] Jung, H. (2018). The Progress of Chinese Service Industries and Entering Strategy. KOTRA. KOCHI 2 (정환우. (2018).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동향과 진출 방안. KOTRA. KOCHI 자료 18-002)
- [6] Kim, B.-G. (2016a). An Analysis on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South and North Korea CEPA. Reunification Strategy, 16(1), 171-209. (김병규 (2016). 제 5 장 Ccpa 체결 사례로 본 남북한 Ccpa 의 타당성과 가능성 분석. 통일전략, 16(1), 171-209. )
- [7] Kim, H. J. and Park, S. (2016). The Prospect Advance of Korean Education-Related Companies for Entry to the Chinese Market through Utilizing the Korea-China FTA. Journal of Future Politics, 6(1), 89-109. (김현정, 박선화 (2016). 한중 Fta 를 통한 한국 교육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망. 미래정치연구, 6(1), 89-109. )
- [8] Kim, J.-D. and Lee, J.-M. (2015). The Result of Korea-China Fta on Service and the Future. KIEP World Economy Today, 15(18). (김종덕, 이주미. (2015).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15-18 )
- [9] Kim, J.-J. (2016b). A Study on the Medical Legal System for Entry into Chinese Medical Service Market. Bio-Medical and Law, 1.67-98. (김정진 (2016).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법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16(67-98. )
- [10] KITA. (2017). Oversea Market News [Online]. Available: [http://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5/index.jsp?sCmd=VIEW\\_CHINA&nPostIndex=15853](http://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5/index.jsp?sCmd=VIEW_CHINA&nPostIndex=15853) [Accessed 20. Aug 2018]. (무역협회상하이지부. (2017). 중, 상반기 해외여행자수 6,203만 명에 달해 [Online]. 무역협회)
- [11] KOTRA. (2017). Oversea Market News [Online]. Available: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1603&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eIdx=&page=1&row=10> [Accessed 21. Aug 2018].
- [12] Lee, D. and Hwang, M. (2013). Which Service Sectors Are Bright in China? - a 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Japan. Trade Focus, 12(55). (이동주, 황미영. (2013). 중국 서비스 시장 어느 업종이 유망한가?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2)
- [13] Lim, D. and Moon, S. (2017). A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Participation Exemption for the Prevention of Overseas Reservation Income. Tax and Law, 2017(13). (임동원, 문성훈 (2017). 해외유보 소득 방지를 위한 경영참여소득면제 도입방안. 조세와 법, 10(2), 313-342)
- [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O.K (2015). Korea-China FTA Annex 8-a-1 Chin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부속서 8-a-1 중국의 서비스 양허표 )
- [15]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O.K (201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기획재정부 (2010) 한-중 조세조약)
- [16] NO, S., OH, J., PAK, J. and LEE, H. (2015). Changes in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s Service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KIEP Research Report 15-09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 (2015).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연구보고서 15-09)
- [17] Park, J. and Kim, E. (2009). The Locations of Hong Kong from Overseas Chinese Investments in China. *Journal of Diaspora Studies*, 3(2), 37-61. (박재수, 김은숙 (2009). 동남아화교의 對중국 투자에서 홍콩의 입지. *디아스포라연구*, 3(2), 37-61)
- [18] Smart, A. and Smart, J. (2017). Transnational Social Networks and Negotiated Identities in Interactions between Hong Kong and China. *Transnationalism from Below: Comparative Urban and Community Research*, 103.
- [19] Sung, H. (2013). Service Trade, Changes in Export Environment, and Response Strate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7(2). (성한경 (2017). 서비스 무역 및 수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연구. *서비스사이언스 학회*, 7(2))
- [20] Sung, Y.-W. (1996). Chinese Outward Investment in Hong Kong: Trends,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ECD Development Centre Working Papers No. 113, OECD. Paris.
- [21] Trade Investment Department, HKSAR. (2017).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Online]. Available: <https://www.tid.gov.hk/english/cepa/index.html> [Accessed 22, Aug 2018].
- [22] UNCTAD (2018). UNCTAD Stat [Online]. UNCTAD. Available: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CS\\_ChosenLang=en](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CS_ChosenLang=en) [Accessed 20, Aug. 2018].
- [23] Wang, Y. (2018). CEPA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Its Implication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Korea-China Fta.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19(4), 197-231. (왕윤중 (2018). 중국-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정이 한중 Fta 서비스무역 후속협상에 주는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19(4), 197-231)
- [24] Yang, P. and Park, M. S. (2015). Key Factor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13th Five-Year Plan World Economy Today, 15-30. (양평섭, 박민숙. (2015).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 경제* 15-30)
- [25] Yeo, J. and Park, M. S. (2012). A Study on the Korea-China Fta Service Negotiation Strategies: Focused on the Implications from China-Hong Kong CEPA Service Concessions. KIEP. KIEP Research Paper 12-03 (여지나, 박민숙. (2012). 중·홍콩 Cc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12-03)

**Lee, Jongseok (peterz73@hotmail.com)**



Lee, Jongseok is working fo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Director. He received his Ph.D in Finance from University of Leeds. His research interest covers corporate governance, performance contract, industrial policy and trade.

# Strategic Value of Hong Kong as a Bridgehead for Entering Chinese Service Market: Focusing on China-Hong Kong CEPA

Jongseok Lee\*

##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way through Hong Kong as an alternative strategy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Chinese service market which is rapidly expanding due to China's recent policy switch toward service economy. Service market is generally more regulated, labor-intensive, and domestic demand-oriented than goods market, which makes opening of domestic markets to foreigners slow. In case of China, market control and regulations by the State is tighter than other econom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avoid regulations from the Chinese government if possible. In this sen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ina-Hong Kong CEPA and draws its strategic value for entering Chinese service market by comparing it with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In addition, utilizing the difference in tax agreements between Korea-China and China-Hong Kong, and the human network of Hong Kong entrepreneurs in China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risk that might arise in China.

*Keywords: service industry, entering China, regulation, China-Hong Kong CEPA, Korea-China FTA*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eterz73@hotmail.com